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 31호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6.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정일윤 의원 대표발의)

1. 제 안 이 유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증진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다.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 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마.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바.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3. 참 고 자 료

가. 관련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집행부 의견조회

라. 심사예고 : 2024. 8. . ~ . .(일간)

마. 기 타

1) 제정 조례안

2)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임실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임실군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

법」 제1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1인가구 지원정책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2. 사회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4. 건강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